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아래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 이라 합니다)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부가된 유효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 >

구 분	특별약관 명칭
①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6주이상)치료지원금(운전자용/비운전자용)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4주이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비운전자용)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6주이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비운전자용)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비운전자용)
② 음주·무 면허·뺑소니 교통사고 관련보장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피해 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피해 부상(6주이상)치료지원금 (운전자용/비운전자용)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피해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비운전자용)

제2조(피해자의 정의)

- ①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에서 피해자라 함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중과실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 ②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관련보장에서 피해자라 함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의 상호과실로 인한 가해자(피의자)인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피해자의 정의’에 해당되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보장」 약관의 피해자로 봅니다.

제3조(중과실 교통사고 등의 정의)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에서 정한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합니다.

1.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보장

가입 당시 약관	특별약관 적용 후
제0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0조(중과실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과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	(삭 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삭 제)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	(삭 제)
제0조(보험금의 청구) 5.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제0조(보험금의 청구) 5. (삭 제)

2.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보장

특별약관 적용 전	특별약관 적용 후
제0조(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0조(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	(삭 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 제2항 단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참조) 제2항 단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는 제외합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사고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는 제외합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사고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삭 제)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봅니다.	(삭 제)
제0조(보험금의 청구) 5.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제0조(보험금의 청구) 5. (삭 제)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